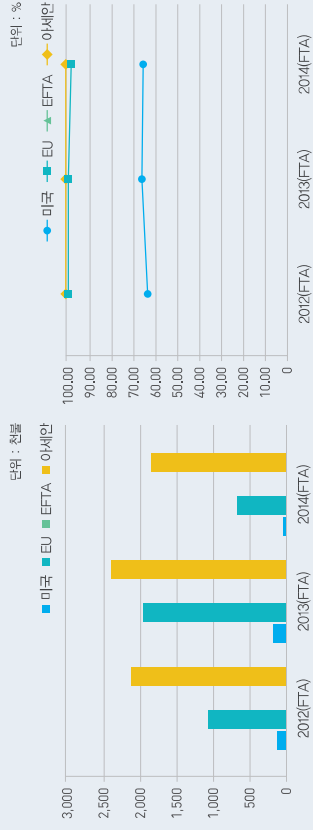


그림 43 조제복숭아(제2008.70호) 협정별 FTA 수입동향



소결

평균버터는 주로 식병에 발리머는 것으로써 베이커리 제품의 소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의 베이커리제품의 소비증가와 함께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평균버터의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복숭아 통조림의 경우, 제품 특성상 유통기간이 길고 소량보다는 큰 사이즈의 대량구매일수록 가격인하 효과가 높다. 따라서, 최근 급증한 국내 도매형태의 마트에서 인기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수입 역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과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 성과<sup>1)</sup>

조미진 교수 명지대학교



무역을 통한 글로벌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가간 교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Baier and Bergstrand (1997)은 무역자유화와 운송비용의 절감 등이 부분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으며, Hummels and Levinsohn(1995)은 비슷한 규모의 국가간 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 무역 규모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세계 무역규모의 증가와 함께 국제무역의 새로운 경향으로 중간재(intermediate goods)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간의 무역 성장의 측면을 최종재(final goods)에 국한하여 분석한 것에서 벗어나 중간재의 역할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 01 들어가면서

1) 본 글은 2014년 6월에 무역학회지에 발표된 '기밀호 FTA의 중간재 수입활용을 분석을 재만남' 하에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선 중간재 교역의 증가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에 기인한 것과 동시에 다년간 혹은 지역간 자유 무역을 향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leiner(2003)는 OECD 및 독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진국의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Hummels, Ishii, and Yi(2001)의 경우 OECD 10개국과 신흥 4개국을 대상으로 수직적 분업(수입된 중간재가 수출품에 투입된 경우로 한정)이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에서 약 21%가 수직적 분업에 의한 것이며, 이들 국가의 수출 성장의 약 30%가 수직적 분업에 의한 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한편 중간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가 학습효과(learning effect)와 다양성 증대 및 질적 향상 효과 등을 초래하여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 Goldberg et al.(2010)은 인도의 기업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관세 철폐가 새로운 중간재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새로운 품목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간재 교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서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과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결과로 중간재를 포함한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중간재에 대한 무역자유화 혜택에 따른 성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2004년에 가장 먼저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FTA가 체결·발효되어 왔으며, 2013년까지의 교역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의 FTA 이행기간이 확보된 만큼 중간재에 대한 무역자유화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의 국내 연구는 FTA 확산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최종재에 국한하여 FTA의 효과를 평가해왔다. 이에 여기에서는 중간재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을 비롯하여 FTA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02 우리나라의 중간재 교역 현황

중간재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요소(inputs)로 정의되는데, 자본, 노동, 혹은 자연자원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일종의 고정자산(fixed asset)의 형태로 투입되어 사용(used)되는데 그지만 중간재는 생산과정에서 소진(used up)되어 변형되거나 혹은 합쳐져 궁극적으로 최종재로 변화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UN에서는 품목의 최종 사용목적(main end-use)에 따라 중간재, 소비재, 자본재 등 3개 범위로 분류하는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간재를 제외한 소비재와 자본재의 경우 최종재로 보면 된다. 따라서 UN에서 제공하는 BEC 코드와 HS 버전별 연계코드(HS 2002, 2007, 2012버전)를 이용하여, 중간재에 대한 수입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우선 [표 1]은 2004~2013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對세계 중간재 수입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액은 2013년 기준 약 5,156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80%에 달하는 약 4,121억 달러가 중간재 수입액이다.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입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4년과 2013년도 수입규모를 비교해보면 중간재와 전체품목에 대한 수입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중간재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85%로 상당한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들 수입의 대부분이 제조업 품목이라는 점이다.

■ 표 1  
한국의 중간재  
수입 현황  
2004~2013년

연도	중간재	최종재	미분류	전체 수입
2004	170,922,315,688.11	53,073,915,830.71	464.8	224,461,111,418.81
2005	200,220,415,439.91	60,616,616,658.61	399.6	261,236,512,098.51
2006	237,969,315,941.01	70,955,517,668.61	456.2	309,381,013,609.71
2007	276,165,117,478.71	80,143,718,880.21	535.6	356,864,416,360.41
2008	350,854,110,850.61	83,828,219,233.81	591.4	435,273,720,084.41
2009	252,964,918,431.71	69,768,118,070.11	351.2	323,084,216,501.71
2010	331,625,519,803.51	93,084,610,005.21	501.7	425,211,819,808.71
2011	418,817,412,588.81	105,181,313,511.01	376.0	524,374,726,099.81
2012	417,961,012,736.41	101,141,313,047.11	479.2	519,581,425,805.91
2013	412,089,212,982.81	103,152,113,252.31	319.2	515,560,626,235.21

주 : 연도별 중간재 수입액은 농산품과 제조품에 대한 구분 없이 중간재에 해당되는 모든 품목을 집계한 것이며, 별도의 내로 박스 안에 HS 01~24류에 해당되는 농산품의 중간재 수입액은 집계함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단위 : 백만 달러

한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간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표 2]에 우리나라의 對FTA 발효국별 중간재 및 전 품목에 대한 수입액 합계와 對세계 수입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FTA 추진 현황을 보면 2004년 4월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FTA(2006년 3월 발효), 한-EFTA FTA(2006년 9월 발효), 한-ASEAN FTA(2007년 6월 발효)가 순차적으로 발효되었는데, 이들 4개의 FTA가 발효된 2008년에 중간재 수입은 488.3억 달러로 한국의 對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2%이다. 이후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를 포함한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한-미 FTA(2012년 3월)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되면서 FTA를 통한 중간재 수입은 약 1,231억 달러, 총 수입은 약 1,768억 달러를 기록하여 한국의 對세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 34%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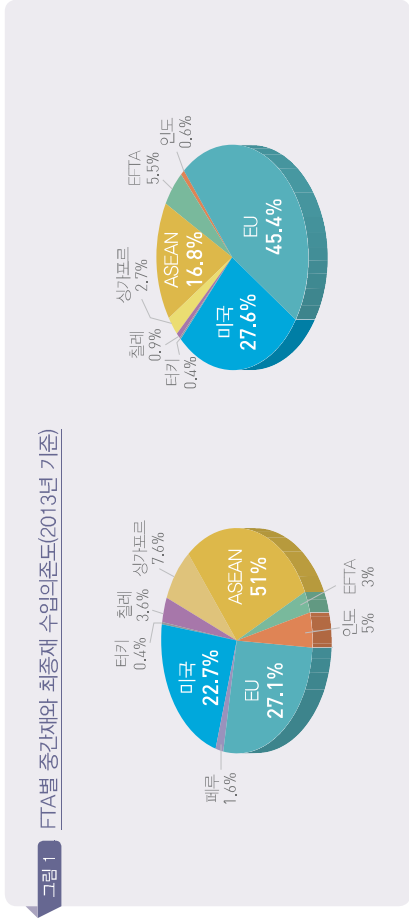
구분	기발효 FTA		對세계 수입액	
	중간재	총수입	기발효 FTA 중간재 수입 비중	기발효 FTA 총수입 비중
2004	1,341.6	1,419.1	0.6	0.6
2005	2,127.2	2,279.2	0.8	0.9
2006	8,049.5	9,577.6	2.6	3.1
2007	39,691.1	47,706.6	11.1	13.4
2008	48,836.3	57,544.2	11.2	13.2
2009	41,468.4	49,576.0	12.8	15.3
2010	56,205.7	67,542.8	13.2	15.9
2011	79,959.5	105,040.9	15.2	20.0
2012	119,322.3	168,484.9	23.0	32.4
2013	123,128.0	176,835.0	23.9	34.3

주: 기발효 FTA의 중간재 및 총수입액은 발효시점이 고려되어 국가별 수입액이 합산되어 측정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러 FTA 가운데 중간재 수입이 주로 어떤 FTA를 통해 유입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TA 발효국에 한정하여 2013년 기준 중간재 수입액의 FTA별 비중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비교 차원에서 최종재에 대한 각 FTA별 수입 비중을 함께 정리해보았다. 우선

중간재의 경우 한-ASEAN FTA를 통해 수입되는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EU FTA(27.1%), 한-미 FTA(22.7%) 순이다. 반면 최종재의 경우 한-EU FTA를 통한 수입이 약 4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미 FTA(27.6%), 한-ASEAN FTA(16.8%) 순으로 높다. 중간재와 최종재 모두 비중은 약간씩 다르나, 주로 미국, EU, ASEAN 회원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1 FTA별 중간재와 최종재 수입의존도(2013년 기준)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하에서는 FTA에서의 중간재 교역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간재 수입의 대부분은 제조업 품목인 만큼 농산품을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음 체결한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3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정하되, 유효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FTA 발효 이후 이행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인 FTA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한-EU, 한-미, 한-페루 FTA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 품목은 한-싱가포르 FTA 외에도 한-ASEAN FTA를 통한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한데, 한-싱가포르 FTA보다 한-ASEAN FTA를 통한 특혜신청 규모가 더욱 큰 만큼 한-싱가포르 FTA 역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기발효 FTA 가운데 한-칠레, 한-ASEAN, 한-EFTA, 한-인도 FTA 등 총 4개 FTA만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 표 2  
기발효  
FTA 체결국과의  
교역 현황

# 03

## 기발효 FTA의 중간재 수입 추이 성과분석

FTA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다양한 연구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활용률(utilization rates) 분석을 통해 중간재 수입 시 FTA를 통한 특혜관계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한다. 활용률 분석의 장점은 실제 국내 교역규모에서 FTA 특혜관계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치 제공을 통해 수입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FTA의 효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간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한편 활용률 분석 결과에 앞서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FTA 성과 분석을 위해 중간재 수입규모의 확대와 외연적 성장(extensive margin)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3]은 칠레, EFTA, ASEAN, 인도 등 4개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 2004~2013년 동안의 수입추이를 정리한 결과이다. 한-ASEAN FTA를 통한 중간재 수입규모가 2013년 기준 약 413.7억 달러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가운데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對ASEAN 전체 수입액의 약 83% 이상을 차지하는 등 ASEAN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의 대부분이 중간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한-칠레, 한-인도 FTA의 경우 수입 규모가 각각 41.4억, 29.9억 달러로, 수입규모 면에서는 다르지만, 한-ASEAN FTA와 유사하게 중간재 수입비중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한-EFTA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중간재 수입규모가 34.4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약 55%만이 중간재 수입으로 여타 FTA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표 3  
각 FTA별  
중간재 수입 추이  
2004~2013년

구분	칠레		EFTA		ASEAN		인도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2004	1,800.9	1,807.5	878.5	1,731.5	14,328.3	21,274.1	1,376.5	1,442.6
2005	2,092.6	2,096.3	788.2	1,760.4	16,717.0	24,901.3	1,871.8	1,960.1
2006	3,578.2	3,580.3	948.0	2,121.9	19,630.6	28,459.9	3,247.1	3,385.8
2007	3,883.6	3,884.5	1,904.4	3,450.9	27,447.6	31,528.1	4,166.9	4,316.1
2008	3,846.3	3,847.6	2,047.9	4,044.6	34,450.3	38,644.5	5,742.5	5,997.5
2009	2,790.7	2,795.2	2,159.4	4,439.6	28,546.3	32,211.7	3,667.8	3,824.1
2010	3,888.6	3,892.4	2,681.2	5,554.2	36,717.4	41,902.4	5,172.5	5,328.3
2011	4,400.4	4,403.2	2,631.9	4,967.3	43,215.9	49,820.7	7,257.7	7,475.9
2012	4,192.1	4,193.0	5,082.2	7,526.3	40,681.3	48,537.2	6,057.7	6,283.1
2013	4,139.1	4,141.0	3,439.7	6,209.6	41,366.1	49,993.9	4,948.8	5,191.4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산업별로 보면 [표 4]에 정리된 것과 같이 2013년 기준 한-EFTA FTA를 제외한 한-ASEAN, 한-인도, 한-칠레 FTA에서 모두 가공광물에 대한 중간재 수입규모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가공광물 산업의 수입규모가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04년과 비교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FTA 발효 직후 금속제품에 대한 수입 규모가 가장 높았으나 최근 들어 가공광물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더욱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EFTA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일반기계 산업의 수입액이 약 7.8억 달러로 가장 높는데 2006년에 비해 약 2.5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FTA 발효 직후와 2013년을 함께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FTA 발효 직후 고무/화학 산업에 대한 수입규모가 컸던 반면 2013년에는 금속제품과 전기기계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커진 것이 특징이다. 한-ASEAN FTA의 경우 FTA 발효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공광물, 전기기계, 고무/화학 등 세 개 산업에 속한 중간재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인도 CEFTA의 경우에도 FTA 발효 이후 가공

광물, 금속제품, 고무/화학 산업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반면,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11년 이후 수입액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로 가공광물, 비금속광물, 의류/직물 산업에 속한 중간재 수입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표4  
**각 FTA·산업별  
 중간재 수입 현황**  
 FTA발효시점 및  
 2013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칠레			EFTA			ASEAN			인도	
	2004	2013	2006	2013	2007	2013	2007	2013	2010	2013	
기공광물	624.6	2,021.4	23.7	409.2	12,096.4	20,487.3	3,236.7	2,783.5			
가죽제품	0.0	1.2	0.5	0.0	14.1	29.7	34.4	57.2			
고무/화학	87.4	4.8	232.3	380.8	2,352.2	4,488.8	458.7	586.7			
금속제품	954.8	1,663.4	110.9	607.9	1,617.6	2,762.1	765.3	973.7			
기타운송기기				0.2	0.4	1.2	4.7	1.9	0.5		
기타제조품	0.0	0.0	4.0	22.9	29.4	76.4	2.6	3.1			
비금속광물	15.2	61.9	56.2	372.4	468.6	271.3	144.2	52.9			
운송기기	0.0	0.0	4.1	5.8	42.6	81.4	23.5	23.0			
의류/직물	0.1	0.3	19.9	40.0	520.5	1,047.6	368.9	286.6			
일반기계	0.1	0.2	315.7	784.5	556.6	988.9	79.2	104.2			
전기기계	0.9	1.4	90.5	589.1	8,309.2	9,207.8	42.4	69.2			
정밀기계	0.0	0.0	76.5	206.6	102.8	310.1	3.6	6.0			
총/포제	117.8	384.4	13.7	20.0	1,336.7	1,410.1	11.0	2.3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2004~2013년 동안의 국내로 수입된 중간재 및 전체 품목의 수를 HS 10단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양국간 교역량 증가가 실제 수입품목의 다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한-칠레 FTA의 경우 2004년 발효 당시 194개의 중간재 품목이 수입되었으나 2013년에 191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여타 FTA에 비해 수입되는 중간재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나, FTA 발효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FTA FTA의 경우 2008년 기준 1,599개의 중간재를 수입, 2013년에는 총 1,717개의 품목을 수입하는 등 약 9.5%의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FTA의 경우에도 발효 시점과 2013년 기준 수입된 중간재 품목수를 비교할 경우 한-ASEAN FTA의 경우 2.3%, 한-인도 CEPA의 경우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ASEAN FTA의 경우 수입규모가 큰만큼 여타 FTA에 비해 보다 다양한 중간재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가운데 유일하게 중간재 품목의 증가율(2.3%)이 전체 품목의 증가율(2.0%)보다 높다.

■ 표5  
**한국의 한-FTA별  
 수입품목수  
 추이**

단위: 개

구분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중간재	전체
2004	94	141	1,567	2,704	2,756	4,636	1,291	1,958				
2005	111	170	1,551	2,696	2,817	4,706	1,372	2,137				
2006	115	186	1,599	2,805	2,811	4,760	1,410	2,250				
2007	117	192	1,601	2,847	2,875	4,877	1,509	2,370				
2008	136	230	1,664	2,940	3,017	5,076	1,677	2,612				
2009	165	274	1,607	2,862	3,104	5,142	1,832	2,823				
2010	165	261	1,628	2,893	3,146	5,247	1,982	3,048				
2011	171	283	1,688	2,977	3,225	5,375	1,997	3,104				
2012	183	287	1,682	2,985	3,226	5,408	2,110	3,331				
2013	191	313	1,717	3,049	3,301	5,482	2,197	3,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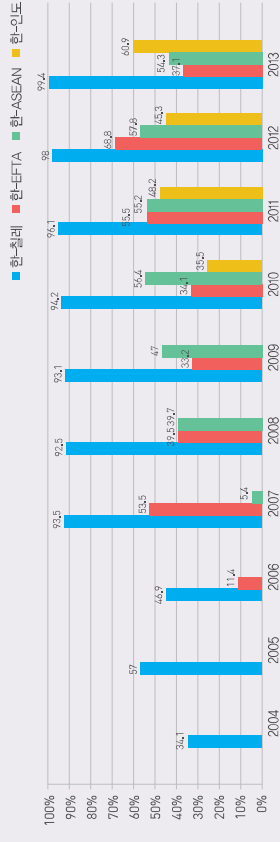
주: HS 10단위 기준 품목수를 기준으로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집계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인도 CEPA의 경우를 제외하고 FTA 발효 이후 대체로 수입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이 진행되면서 기존 중간재 품목의 수입 확대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FTA 이전에 국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품목의 진입이 가능해진 외면적(external) 성장이 뒷받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간재 수입 품목의 다변화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5]에 4개 FTA를 대상으로

이와 같이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FTA 체결의 효과가 100% 반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FTA가 발효되더라도 해당 수입중간재가 역내산임이 입증되어야만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전체 수입액 가운데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된 중간재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입활용률 분석이 뒷받침 되어야만이 앞서 살펴본 수입규모의 확대와 중간재 품목의 다변화에 FTA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활용률은 일정 기간 동안 FTAs를 포함한 특혜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수입품의 전체 수입액 중에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의 비율로 정의되며, [그림 2]에 각 FTA별 중간재에 대한 수입활용률의 측정 결과를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각 FTA별 이행과정에서의 변화와 파악해볼 수 있는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기간이 3년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FTA의 경우 충분한 이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한-칠레 FTA의 경우 2013년 기준 99.4%의 활용률을 기록하는 등 수입중간재 품목이 특혜대상 품목일 경우 거의 모든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EFTA FTA의 경우 2012년 들어 68.8%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37.1%로 낮아지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ASEAN FTA의 경우에는 2007년 5.4%로 가장 낮은 활용률에서 출발하였으나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0년 이후 50%대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의 경우 현재까지 활용률이 이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2013년 기준으로 활용률이 약 61%를 기록하는 등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FTA별 중간재 수입활용률 추이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6]은 상기의 연도별 추이에서 벗어나 각 FTA별 발효 시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의 중간재 수입실적을 토대로 수입활용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각 FTA별 포괄적인 성과를 비교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칠레 FTA의 경우 2004년 4월부터 2013년 동안의 FTA 특혜대상 수입액이 약 191억 달러로, 이중 실제 특혜관세가 적용된 수입액은 약 149억 달러로 여타 FTA에 비해 가장 높은 78%의 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7년 이전의 활용률이 저조했던 만큼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어 이행 기간 전체의 활용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EFTA, 한-ASEAN, 한-인도 등 나머지 3개의 FTA 모두 전체 이행기간의 수입실적을 토대로 집계된 활용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한-인도 CEPA의 경우 이행 초기단계임을 감안할 경우 48.2%의 활용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향후 활용률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래 표에는 특혜신청이 가능한 품목이나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에 주로 적용되는 관세율로 MFN 세율과 할당세율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관세율이 적용된 품목의 수입 규모 역시 함께 정리해두었다. 할당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반면 수입자는

특혜세율 적용이나 할당관세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이 인하되는 과정에서 할당세율보다 특혜세율이 높을 경우 할당세율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준비가 미흡한 경우 할당세율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EFTA를 제외한 칠레, ASEAN, 인도 등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비중이 미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한-칠레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15.4%에 달하는 29.5억 달러, 한-ASEAN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21.0%인 312억 달러, 한-인도 CEP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14.4%인 10.1억 달러에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한-EFTA FTA의 경우 특혜대상 수입액의 약 46.2%에 달하는 80.5억 달러에 MFN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 FTA의 전반적인 활용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MFN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규모가 줄어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한-칠레 (2007~13)	한-EFTA (2006~13)	한-ASEAN (2007~13)	한-인도 (2010~13)
MFN 세율 적용 수입액	846.0	8,047.3	32,490.5	1,968.0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액	14,918.2	8,192.2	69,189.6	3,371.4
할당관세 적용 수입액(A)	2,952.1	621.7	31,208.7	1,008.0
특혜대상 수입액(B)	19,058.5	17,335.2	148,669.3	6,997.2
중간재 전체 수입	34,612.7	20,894.7	252,425.0	23,436.7
활용률(A/B)	78.3	47.3	46.5	48.2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표6

### 한국의 對FTA별 전체 이행기간의 수입활용률

## 04 마치며

지금까지 칠레, EFTA, ASEAN, 인도 등 분석대상에 포함된 FTA 체결상대국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FTA 체결 이후 중간재 수입의 변화 양상을 비롯하여 수입 중간재 품목의 다변화 정도, 그리고 FTA의 활용률 분석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FTA 확산에 따른 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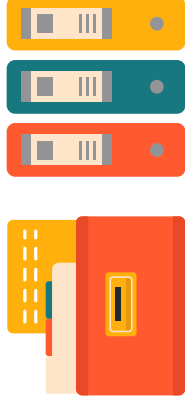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한-칠레 FTA를 제외한 EFTA, ASEAN, 인도 등 3개의 FTA의 경우 전체 이행기간을 감안하여 본다면 중간재 수입실적의 절반 정도에 실제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이후 양 당사국 간의 교역 확대 및 품목 다변화에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한-ASEAN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최근 활용률이 정체되어 있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중간재 품목별 공급 현황 및 국내 생산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도 등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토대로 특혜관세 활용률 개선의 여지를 높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인도 CEPA의 경우 연차별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향후 활용률 개선의 여지가 높은 반면, 중간재 전체 수입액 규모에서 특혜대상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재가 최종재보다 국내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욱 크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중간재의 수입활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각 FTA별, 그리고 산업별 보다 미시적인 접근에서 기업들이 FTA 특혜신청을 포기하는 원인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미, 한-EU FTA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의 경우 이행기간이 확보된 이후 활용률에 대한 추가 고려를 포함하여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비용 추정연구 등이 지속되어 FTA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FTA 원산지검증에 대한 수출입 업체의 대응 전략

이승열 법무법인 회우



## 01 개요

### FTA 원산지검증

FTA 원산지검증이란 FTA협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 기준·원산지증명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 시정하거나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특혜관세 적용배제 등)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현재 FTA 원산지검증은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 FTA협정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해당 협정별 세부적인 사항은 언급을 생략하며 크게 수입국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지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침범이 가능한 간접검증으로 구분되는 정단만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 수출입 업체의 FTA 원산지검증 시 문제점

수출입 업체의 FTA 원산지검증업무 대응 영역을 수행하다보면, 상당수의 수출입자가 FTA 원산지검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소 인이한 대응으로 준비하다 뒤늦게 입증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겪고 결국 원산지 부인에 따른 특혜관세 추징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에,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의 대응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따른 수출입자가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래상대방과의 정확한 원산지검증 자료협조(의사소통) 부족

수출입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시 관세당국은 우선 해당 수입자에게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통상 30일의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기한이 주어집니다(자료 등의 준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 입증은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동 물품의 수입자는 수출자 등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검증과 관련된 원산지 입증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상이한 국가에 위치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양질의 충분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 30일은 결코 충분한 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대응 업무를 제공해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과 달리 외국기업(특히 수출자의 경우)은 관련 자료작성 및 준비 등에 있어 내부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서면조사 공문을 수령한 업체는 거래상대방(수출자 등)에게 원산지검증을 위한 소명자료를 요청함에 있어 시간적 압박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수출자 등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지부터 준비과정이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자 등에게 필요한 요청자료를 정확히 지시하지 아니하여 30일의 서류제출기한 동안 특별한 자료준비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 02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 대응의 문제점



결국,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관세당국에 제출하게 되면, 이 자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함에 있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 검증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원산지검증을 위한 입증자료의 준비 방법의 미숙

상당수의 수출입자가 해당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소명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관세당국에 제출하지만, 대부분 해당 자료를 검토해 보면 관련업무 담당자 이외의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자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검증은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해당 입증자료를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의 입증자료 준비 방법은 철저하게 "해당분야의 초보자에게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여야 하는 작업입니다.

### 정확한 규정 등의 미숙지

실제로 한 수입업체가 FTA 원산지검증 서면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수출자에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자료를 요청하였고, 수출자로부터 각 수입 제품별 BOM을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제공한 BOM 중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해당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PSR)인 4단위 세번변경(CH)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라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출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물품이 NAFTA 협정 하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산이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미국산이라 표시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동일한 품목 A에 대해 한-미 FTA와 NAFTA가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FTA와 동일한 기준으로 미국산임을 판정하여 한-미 FTA에 적용한 케이스



품목 A의 원산지결정기준 | 한-미 FTA : CH(4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산 원산지 불충족 / NAFTA : CCC(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산 원산지 충족

이처럼 수출자 중 상당수의 기업이 자사의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 및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뿐만 아니라 FTA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시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발급방법 및 요령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세당국의 오해와 그로 인한 특혜 관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원산지검증에 있어 객관적 입증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

수출입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은 사전에 다양한 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사유에 기초하여 검증에 착수합니다.

실제 수출입업체의 원산지검증 대응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수출입자 중에 "거래상대방과의 오랜 계약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수출자는 믿을 만하므로 수출자가 주장하는 원산지는 100% 신뢰성이 있다." 또는 "수출국의 사회 특성상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수출자는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없고 처벌을 받으므로 원산지 제품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담당자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당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산지검증이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수출입물품의 정확한 원산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즉, 객관적인 원산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관세당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03

## FTA

원산지검증 시  
수출입자의  
대응방안

## 전문가의 설의를 통한 정확한 원산지검증 전략 수립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 조사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의 경우 효과적인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분야의 전문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입증에 위한 정확한 요청자료 파악 가능  
우선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구비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요구하여야 할 관련자료의 내용, 구성 및 형식 등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요청은 자료준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 시간을 단축하여 서류 제출기한 내에 양질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합니다.

수출입자와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한 원산지검증의 이해도 향상  
FTA 협정 및 이행특례법령 상의 정확한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 수출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적 혹은 실무적 상황에 있어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은 양 거래당사자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키고, 필요 시 신속한 결과물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상의 정확성 확인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입증자료 검토 시 해당 원재료 등의 품목분류(HS)의 정확성, 협정상 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적용 및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상의 오류 여부 등에 대한 기초적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정확한 입증자료의 제공이 가능  
관세당국에서 어떠한 형태의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자료로 준비·기공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게 때문입니다.

## 수출자와의 매매계약 시 원산지검증 관련 세부조항 삽입

원산지검증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등을 추정당하는 경우 그 1차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는 반드시 수출자와의 매매계약서상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있는 경우 수입자와 수출자가 원산지 입증자료 소명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불이행 시에는 양 당사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원산지 입증에 정확하지 못하여 특혜관세 적용해택을 부인 당할 경우 그 책임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어떠한 비율로 부담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설정을 통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 내부 원산지 관련 전담자 또는 전담조직 운영

효과적인 FTA 원산지검증 대응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자 또는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FTA 원산지검증을 받은 수출업체 중 상당수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FTA 전담자가 아닌 구매, 회계부서의 담당자였는데, 이들은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원산지검증을 대응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가하는 FTA활용 수출입거래와 관련하여 전담관리자 또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위험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원산지관리 실태 점검 실시

주기적으로 협정부, 품목별 원산지결정을 위한 모의검증을 실시하여 FTA 원산지검증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자의 협조가 가능할 경우 수출물품의 원재료 공급선 또는 기술개발에 따른 원재료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FTA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 역시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하나의 위험관리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04 결어

실제본 비외 같이 실제 원산지검증 대응 영역을 수행하면서 원산지검증을 받는 업체가 느끼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은 현재 기업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일 수 있으며, 어떠한 대응 방안은 우리 기업에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원산지검증은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써,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관세당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소명하는 과정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여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가 원산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있으나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가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적절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수출입자는 원산지검증 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수출자 등과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는 양질의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통하여 관세당국의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면 효과적으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FTA 활용 관리 방안으로 원산지 전담조직 등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FTA 원산지 관리방안을 구축한다면 기업이 향유할 수 있는 FTA 이익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마땅한 두려움 속에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한 대응으로 FTA 시대의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방안

오수교 전문위원 국제원산지검보원

각종 FTA에서 정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산지상품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이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방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기관발급은 세관인 국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EU FTA협정과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라도 6,000유로를 초과하여 EU회원국기로 수출하는 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수출자로 인증 받은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sup>3)</sup>와 품목별 인증수출자<sup>4)</sup>로 구분하는데 전자의 경우

2) 한·EU FTA 협정문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제1항)에 의하여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할 수 있다(다음 각 호 요건 생략).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할 수 있다(다음 각 호 요건 생략).

## 01 개요